원우1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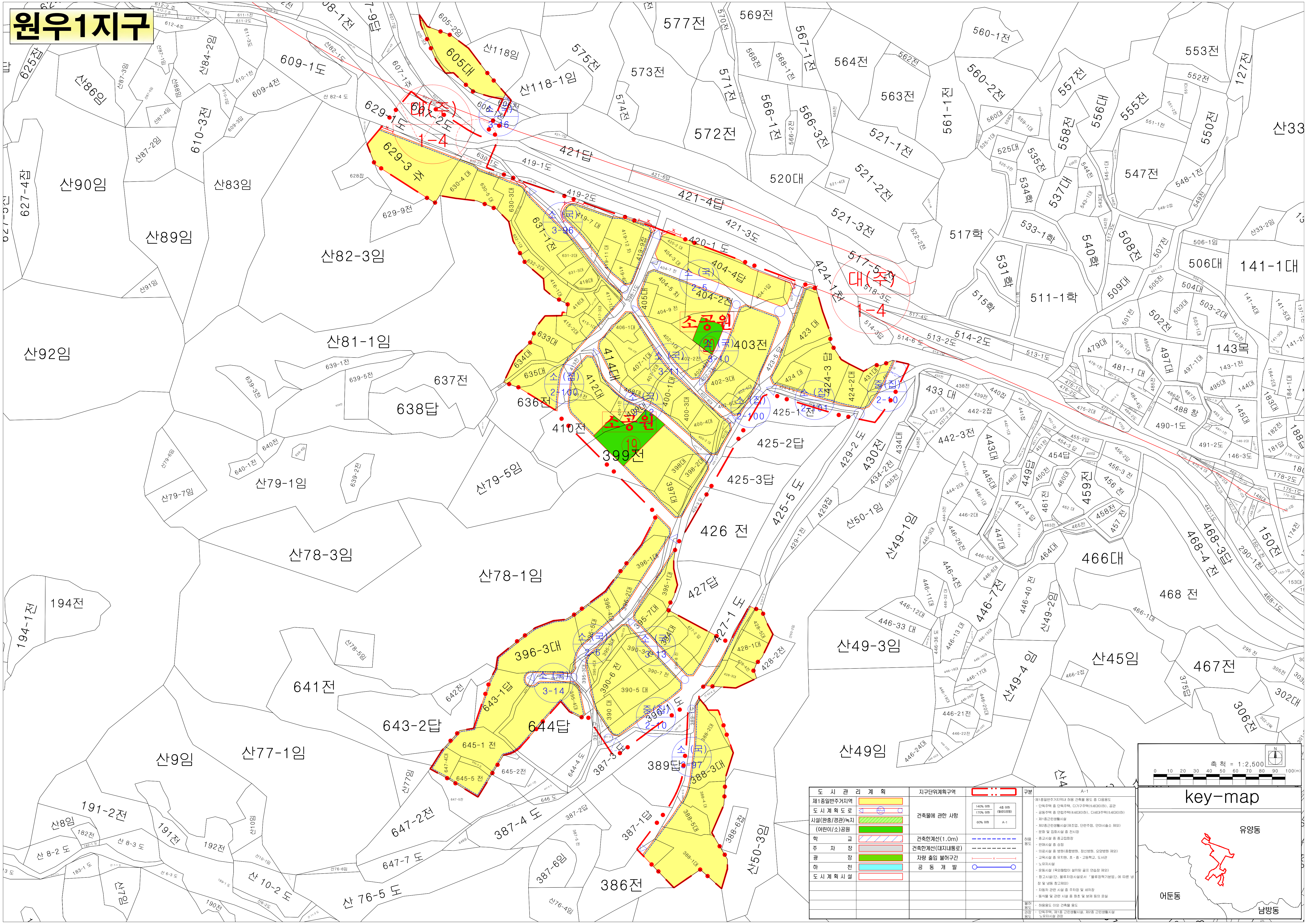

도 시 관 리 계 획		지구단위계획구역	
제1종일반주거지역	🟨	건축물에 관한 사항	140% 이하 / 170% 이하, 4층 이하 (필로티포함), 60% 이하, A-1
도 시 계 획 도 로	소( ) 1-1		
시설(완충/경관)녹지	▨		
(어린이/소)공원	🟩		
학 교	▨	건축한계선(1.0m)	- - - - -
주 차 장	⬜	건축한계선(대지내통로)	- - - - -
광 장	🟩	차량 출입 불허구간	×—
하 천	🟦	공 동 개 발	○—○
도 시 계 획 시 설	🟥		

구분	A-1
허용 용도	·제1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 건축물 용도 중 다음용도 -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(5세대이하), 공관 -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(6세대이하), 다세대주택(5세대이하) - 제1종근린생활시설 - 제2종근린생활시설(제조업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 -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-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- 판매시설 중 상점 - 의료시설 중 병원(종합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 제외) - 교육시설 중 유치원, 초・중・고등학교, 도서관 - 노유자시설 - 운동시설 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제외) - 창고시설(단, 물류저장시설로서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따른 냉장 및 냉동 창고제외) -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- 동식물 및 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
불허 용도	· 허용용도 이외 건축물 용도
권장 용도	· 단독주택,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권장